세종 더휴 예미지(새나루마을 4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1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일원) ■ 공급대상: 분양주택 338세대 (59㎡ 178세대, 84㎡ 101세대, 97㎡ 59세대)

세종 더휴 예미지 분양 상담전화(1833-332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지로서 ① 85m²이하 국민주택과 ② 85m²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같은 블록이라 하더라도 청약신청 시 ① 85m²이하 국민주택과 ② 85m²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동시분양 하는 아래 9개 주택 중 1개 주택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① L1블록(85m²이하), ② L1블록(85m²초과), ③ L2블록(85m²이하), ④ L2블록(85m²초과), ⑤ L4블록(85m²이하), ⑥ L4블록(85m²초과)
- ⑦ M1블록(85m²이하), ⑧ M4블록(85m²이하), ⑨ M4블록(85m²초과)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포함) 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
- **같은 단지** (주택관리번호가 같은 경우)
- ① 본인이 85m²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본인이 85m²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내역 무효처리)
- ② 본인이 85m²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m²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부적격처리)
- ③ 본인이 85m²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m²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부적격처리)
- ④ 본인이 85m²초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 본인이 85m²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내역 무효처리)
- ⑤ 본인이 85m²초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m²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시 둘 다 **부적격처리**되나,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고 일반공급 당첨은 부적격 처리**)

- **다른 단지** (주택관리번호가 다른 경우)
- ① 본인이 85m²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본인이 85m²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각각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 ② 본인이 85m'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m'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둘 다 부적격처리)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2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85㎡이하 국민주택은 2019000481, 85㎡초과 민영주택은 2019000482이며, 공고문은 세종 더휴 예미지 홈페이지(www.thehue-yemizi.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u>2019.05.24(금) 10:00부터</u>이며, 팸플릿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thehue-yemizi.com)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한 85㎡이하 국민주택과 85㎡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85㎡이하 국민주택과 85㎡초과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85m'이하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됨)하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85m'초과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면적 구분없이 특별공급은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에게만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 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8.05.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 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주민등록 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 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 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법」에 의거하여 <mark>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재당첨제한 기간 85㎡이하 국민주택은 3년, 85㎡초과 민영주택은 1년**이 적용됩니다.</mark>
- 분양권 전매 제한(부기등기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06.10.)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되며,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5년간(2024.06.09.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제6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 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 소득 요건

구분	85㎡이하 국민주택	85㎡초과 민영주택
신청가능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특별공급											
신청자격	이전	기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85m²이하	85m ² 초과	85m²이하	85m²이하	85m ² 초과	85m²이하	85m²이하	85m ² 초과	85m²이하				
입주자저축	불필요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칵유장 장애인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예치금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예치금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자산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일반	공급					
신청자격		1순위		2순위					
	60m²이하	60m²초과 ~ 85m²이하	85m²초과	60m²이하	60m²초과 ~ 85m²이하	85m²초과			
입주자저축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압구시시국	(24개월, 24회 이상)	(24개월, 24회 이상)	(24개월, 예치금 이상)	(2순위)	(2순위)	(2순위)			
자산요건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19.0	5.29.(수)	2019.05.30.(목)	2019.05.31.(금)	2019.06.10.(월)	2019.06.11.(화) ~ 2019.06.14.(금)	2019.06.26.(수) ~ 2019.06.28.(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u>www.apt2you.com</u>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접수 (10:00 ~ 16:00)	(10:00 ~ 16:00)
장 소	■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세종시, http://apt.housing.or.kr)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 - PC: www.apt2ypu.com - 스마트폰: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kbstar.com - 스마트폰: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pu.com - 스마트폰: APT2you 앱	■대상자 - 특별공급 당첨자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추후 고지	당사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 ※ 당첨자 조회방법 : 개별조회(PC : www.apt2you.com, 스마트폰 : APT2you 앱)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세종 더휴 예미지 견본주택(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단, 제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 업무는 한국주택협회에서 실시하며,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 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 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 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 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통합 주택형 유의사항

■ 통합(청약) 주택형 안내

통합 주택형	59.9800A	59.9800B	59.9800C	84.9200A	84.9100B	84.9200C	84.0000D	97.0000A
+1151 5101	FOA FOAT	FOR	FOC	0.4.4	0.40	0461 0462	84D2,84D2O	074107420742
해당 타입	59A,59AT	59B	59C	84A	84B	84C1,84C2	84D3,84D3O	97A1,97A2,97A3

- 본 사업지는 신청(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동일 주택형 내 해당 타입의 구조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 내 일부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한 타입에 대하여 공급금액 차등을 주었으므로, 신청(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외관 입면특화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해 시공하는 부분으로 당사에 일체 이의 및 변경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주택형	해당 타입	세대수	설계 관련 내용
59.9800A	59A	85	기본형
59.96UUA	59AT	6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 침실1 돌출발코니(테라스) 설치
84.9200C	84C1	54	기본형
64.9200C	84C2	1	지하 다락방 설치(복층형), 1층 세대만 해당
	84D2		알파룸2 추가 세대
84.0000D	84D2O	4	테라스가 없는 세대
64.000D	84D3	4	알파룸2 추가 세대
	84D3O	3	테라스가 없는 세대
	97A1	27	기본형
97.0000A	97A2	16	침실3 발코니 추가 세대
	97A3		주방 팬트리 공간 이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이형타입 전시관 또는 분양 안내물(홈페이지, 팸플릿 등)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는 공급안내문 등의 유인물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통합주택형 내 해당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1블록 : 공동주택 지하1층, 7~20층(최고), 6개동 ① 85㎡ 이하 국민주택 279세대 (특별공급 250세대, 일반공급 29세대 포함) ② 85㎡ 초과 민영주택 59세대 (특별공급 33세대, 일반공급 26세대 포함)

2. 공급대상

							세대당				공유				공급시	네대수						최하층	
블록	모델 번호	통합 주택형	구 분	해당 타입	발코 니	공급	면적		밖의 ·면적	계약 면적	o ㅠ 대지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최고 층수	1층 세대	위 우선 배정	예정
	<u> </u>	Tio	Œ	-1 8	유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계)		71	이전 기관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공급	οт	수	세대	시기
						합	계					338	168	16	41	27	7	24	55	-	13	12	
	01	59.9800A		59A	선택	59.9800	19.4354	8.6677	33.2742	121.3575	53.1713	91	45	3	13	9	2	15	4	19	5	5	
	02	59.9800B		59AT	선택	59.9800	19.4354 19.4354	8.6677	33.2742 33.2742	121.3575 121.3575	53.1713 53.1713	37	18	2	<i>C</i>	1	1	1	5	19	1	1	-
	02			59B	선택	59.9800								2	6	4	1	1	5	_	1	Т	-
	03	59.9800C		59C	선택	59.9800	19.4354	8.6677	33.2742	121.3575	53.1713	50	25	2	/	5	1	3	/	17	-	-	_
	04	84.9200A		84A	선택	84.9200	27.5168	12.2718	47.1098	171.8186	75.2801	18	9	1	3	2	-	-	3	19	-	-	
	05	84.9100B	국	84B	선택	84.9100	27.5136	12.2704	47.1043	171.7983	75.2712	13	6	1	2	1	-	-	3	8	-	-	
L1	06	84.9200C	민	84C1	선택	84.9200	27.5168	12.2718	47.1098	171.8186	75.2801	55	28	3	8	5	2	5	4	20	2	1	
블록	06	04.9200C	_	84C2	선택	84.9200	27.5168	12.2718	47.1098	171.8186	75.2801	33	20	3	0	3		3	4	20		1	′21.11
27				84D2	선택	84.6800	27.4390	12.2371	46.9767	171.3330	75.0673												
	07	94 00000		84D2O	선택	84.6800	27.4390	12.2371	46.9767	171.3330	75.0673	15	8	1	2	1			3	8	2	2	
	07	84.0000D		84D3	선택	84.3900	27.3451	12.1952	46.8158	170.7462	74.8103	13	0	1	Z	1	_	_	3	0	2	2	
				84D3O	선택	84.3900	27.3451	12.1952	46.8158	170.7462	74.8103												
			민	97A1	선택	97.2300	31.5056	14.0508	53.9389	196.7254	86.1928												1
	01	97.0000A	_	97A2	선택	97.4300	31.5705	14.0797	54.0498	197.1300	86.3699	59	29	3	-	-	1	-	26	20	3	3	
			영	97A3	선택	97.4800	31.5867	14.0869	54.0776	197.2312	86.4144												

- ※ 주택형별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 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하여 1층 세대수와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수가 상이합니다.
- ※ 사업계획 승인 시 세대별 주택면적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안내 시에는 소수점 4자리까지 상세하게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통합 주	^드 택형	59.9800A	59.9800B	59.9800C	84.9200A	84.9100B	84.9200C	84.0000D	97.0000A	
해당	ELOI	59A,59AT	59B	59C	84A	84B	84C1,84C2	84D2,84D2O,	97A1,97A2,	합 계
พื่อ	- [집	39A,39A1	390	390	04A	04D	04C1,04C2	84D3,84D3O	97A3	
이전기관 중	종사자 등	45	18	25	9	6	28	8	29	168
	국가유공자	2	1	1	-	-	2	-	-	6
	사업지구 철거민	1	-	-	-	-	-	-	-	1
	장애인	2	-	1	-	-	1	-	-	4
	북한이탈주민	1	-	-	-	-	-	-	-	1
	10년이상 복무군인	1	-	-	-	-	-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	-	-	-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1	-	-	-	-	-	-	-	1
기친구선 국물이다	우수선수·기능인	-	-	-	-	-	1	-	-	1
	공무원	1	-	-	-	-	-	-	-	1
	의사상자	1	-	-	-	-	-	-	-	1
	납북피해자	1	-	-	-	-	-	-	-	1
	다문화가족	1	-	-	-	-	-	-	-	1
	체육유공자	1	-	-	-	-	-	-	-	1
	입주기업 종사자	1	-	1	-	-	1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해지역(50%)	2	1	1	1	1	2	1	2	11
디자디기구 독일이다	기타지역(50%)	1	1	1	-	-	1	-	1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해지역(50%)	7	3	4	2	1	4	1	-	22
	기타지역(50%)	6	3	3	1	1	4	1	-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해지역(50%)	5	2	3	1	1	3	1	-	16
아에지도 국물이다	기타지역(50%)	4	2	2	1	-	2	-	-	1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해지역(50%)	1	1	1	-	-	1	-	1	5
	기타지역(50%)	1	-	-	-	-	1	-	-	2
합	계	87	32	43	15	10	51	12	33	283

4.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세당근 경양근 중도금(60%)							0.71.7						
통합 주택형	해당 타입	동별	층별	해당 세대	공급금액	계약금 (10%)	1호 (10%)	2호 (10%)	3호(10%)	4호 (10%)	5호 (10%)	6호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주택형	타입	02	0 2	수	0807	계약시	19.10.10	′20.02.10	′20.06.10	′20.10.12	′21.02.10	′21.06.10	인주시	.[(30%)
			1층	4	241,0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17,300,000	55,000,000
		401동 2호	 2층	4	248,0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19,400,000	55,000,000
		401동 3호 406동 2호	3층	4	254,0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1,200,000	55,000,000
		406동 3호	4층	4	259,0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2,700,000	55,000,000
	59A		5층이상 1층	32	264,000,000 233,000,000	26,400,000 23,300,000	24,200,000 14,900,000	55,000,000 55,000,000						
		401동 5호	2층	3	241,0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17,300,000	55,000,000
59.9800A		402동 4호	3층	3	246,0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8,800,000	55,000,000
		406동 5호	4층	3	251,0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0,300,000	55,000,000
		401동 1502호	5층이상	27	256,0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1,800,000	55,000,000
	59AT	4018 13029 4018 16029 4018 17029 4068 13029 4068 14029 4068 15029	5층이상	6	266,0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4,800,000	55,000,000
		401 E 4 ÷	2층	2	243,0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17,900,000	55,000,000
		401동 4호 406동 4호	3층 4층	2	249,000,000 254,000,000	24,900,000 25,400,000	19,700,000 21,200,000	55,000,000 55,000,000						
		1008 1	5층이상	12	259,0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2,700,000	55,000,000
59.9800B	59B		1층	1	229,0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13,700,000	55,000,000
		402E 2÷	2층	1	236,0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15,800,000	55,000,000
		402동 3호	3층 4층	1	241,000,000 246,000,000	24,100,000 24,600,000	17,300,000 18,800,000	55,000,000 55,000,000						
			5층이상	15	251,0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0,300,000	55,000,000
			2층	2	243,0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17,900,000	55,000,000
		401동 1호	3층	2	249,0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19,700,000	55,000,000
		406동 1호	4층	2	254,000,000 259,0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900,000	25,400,000	25,400,000 25,900,000	25,400,000	21,200,000	55,000,000
59.9800C	59C		5층이상 2층	26	236,000,000	25,900,000 23,600,000	25,900,000 23,600,000	25,900,000 23,600,000	23,600,000	25,900,000 23,600,000	23,600,000	25,900,000 23,600,000	22,700,000 15,800,000	55,000,000 55,000,000
		401동 6호	3층	2	241,0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17,300,000	55,000,000
		406동 6호	4층	2	246,0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18,800,000	55,000,000
			5층이상	12	251,0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0,300,000	55,000,000
			2층	1	364,000,000 372,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
84.9200A	84A	402동 2호	3층 4층	1	372,000,000	37,200,000 38,000,000	111,600,000 114,000,000	-						
			5층이상	15	387,0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
			2층	2	353,0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
84.9100B	84B	403동 3호	3층	2	361,0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
0 110 2002	⁷⁸ 8 ⁴⁸ 405동	405동 3호	4층	2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
			5층이상 1층	7	376,000,000 345,000,000	37,600,000 34,500,000	112,800,000 103,500,000	-						
		403동 1호	2층	4	357,0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
		403동 2호 405동 1호	3층	4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
	0.454	405동 2호	4층	4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
84.9200C	84C1		5층이상 2층	22	380,000,000 346,000,000	38,000,000 34,600,000	114,000,000 103,800,000	-						
			2등 3층	1	353,0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800,000	_
		404동 2호	4층	1	361,0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
			5층이상	16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
	84C2	403동 101호	1층	1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
		403동 104호 403동 504호	1층	2	334,0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
	84D2	405동 104호	5층이상	2	367,0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_
		405동 504호 403동 204호												
	84D2O	403동 604호	2층	2	342,0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
84.0000D	04020	405동 204호 405동 604호	5층이상	2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
	84D3	403동 304호 403동 704호 405동 304호	3층	2	351,0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105,300,000	-
		405동 704호	5층이상	2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
	84D3O	403동 404호 405동 404호	4층	2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
	1.230	405동 804호	5층이상	1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_
		402동 1호	5층이상	7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
			1층	1	391,0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
	97A1	404동 3호	2층 3층	1	404,000,000 413,000,000	40,400,000 41,300,000	121,200,000 123,900,000	_						
		.010 0±	4층	1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
			5층이상	16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_
97.0000A			1층	2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
3300011	0740	402동 1호	2층	1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
	97A2	404동 1호	3층 4층	2	427,000,000 435,000,000	42,700,000 43,500,000	128,100,000 130,500,000	-						
			4등 5층이상	1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0,500,000	-
		400 = 4 :	2층	1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
	97A3	402동 1호 404동 1호	4층	1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
			5층이상	14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이 사업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한신공영(주)과 (주)금성백조주택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공동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신공영(주) / (주)금성백조주택]이며,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주택형별, 충별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5}m² 초과 주택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60m²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상기 주택도시기금은 입주 시 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채무인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 지정계좌로 상환 하실 수 있습니다.
- ※ 공사가 수융받은 해당 주택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입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융자금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계좌구분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이피트 고그대그	계약금	농협은행	301-0251-6490-31	하군투지주택곡사 세종트벽보브		
아파트 공급내급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안국도시구텍승자 제공득결론무		

- ※ 상기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대금 및 플러스옵션(시스템에어컨 등)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분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1차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5.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구분			공급가격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통합 주택형	해당 타입	발코니 면적(m²)	확장 면적(m²)	8 등 대석	계약시	'19.10.10	입주지정일
59,9800A	59A,59AT	34.1538	22.6147	10,300,000	1,030,000	1,030,000	8,240,000
59.9800B	59B	27.2587	16.1477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59.9800C	59C	28.9898	17.8788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84.9200A	84A	39.5921	28.1536	12,900,000	1,290,000	1,290,000	10,320,000
84.9100B	84B	39.8007	26.0070	12,600,000	1,260,000	1,260,000	10,080,000
84.9200C	84C1,84C2	35.6637	23.8524	12,300,000	1,230,000	1,230,000	9,840,000
84.0000D	84D2,84D2O	41.8319	29.9545	13,800,000	1,380,000	1,380,000	11,040,000
04.0000D	84D3,84D3O	43.7059	31.8285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97A1	42.3316	30.3698	12,400,000	1,240,000	1,240,000	9,920,000
97.0000A	97A2	46.1056	30.3906	12,400,000	1,240,000	1,240,000	9,920,000
	97A3	46.2357	29.7663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바그나하자데그	계약금	농협은행	301-0251-6483-0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발코니 확장대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및 플러스옵션(시스템에어컨 등)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1차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세대별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 각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 **형태**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김치냉장고, 세탁기, TV),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플러스 옵션(추가 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급가격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통합 주택형	해당 타입	선택	설치 위치	실내기	승급기억	계약시	'19.10.10	입주지정일
59,9800A	59A,59AT	기본	거실(주방)+침실1	2	3,300,000	330,000	330,000	2,640,00
59,9600A) 39A,39A1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4	5,500,000	550,000	550,000	4,400,00
59.9800B	59B	기본	거실(주방)+침실1	2	3,300,000	330,000	330,000	2,640,00
39.90UUD	390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4	5,500,000	550,000	550,000	4,400,00
59.9800C	59C	기본	거실(주방)+침실1	2	3,300,000	330,000	330,000	2,640,00
39.9600C	390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4	5,500,000	550,000	550,000	4,400,0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
84.9200A	84A	전실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0
		전실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7,900,000	790,000	790,000	6,320,00
84.9100B	84B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
84.91008	04b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0
	84C1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450,000 3,600,000 680,000 5,440,000 450,000 3,600,000
84.9200C	84C1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64.9200C	0.4.6.2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
	84C2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
	84D2,84D2O	전실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
		전실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7,900,000	790,000	790,000	6,320,0
		전실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0
84.0000D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
		전실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
	84D3,84D3O	전실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7	9,200,000	920,000	920,000	7,360,0
		전실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
		전실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6	7,900,000	790,000	790,000	6,320,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
	97A1	전실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
		전실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7,900,000	790,000	790,000	6,320,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
97.0000A	97A2	전실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
37.000071		전실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7,900,000	790,000	790,000	6,320,0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
	97A3	전실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800,000	680,000	680,000	5,440,00
	37.53	전 글 ¹ 전실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7,900,000	790,000	790,000	6,320,00
			│ 거절+무망+점절I+점절Z+점절3+월따뭄 	-	, ,	,		0,32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무상옵션 품목

구분	선택 가능 타입	1안 기본형	2안 선택형	바고
욕실1 선택	전 타입	욕조 설치	샤워부스 설치	
보조주방 선택	59B,59C	보조주방 싱크대 설치	김치냉장고 공간 설치	※ 2안 선택시 싱크대는 미설치됩니다.
가변형 벽체 선택	84D2,84D2O,84D3,84D3O	침실3, 알파룸 개별	침실3+알파룸 통합	

■ 유상옵션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59AT, 84BT 타입은 침실1돌출발코니(테라스)로 인해 안방붙박이장 설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품목	업체명	모델명	선택 가능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19.10.10	잔금(80%) 입주지정일
	하이브리드쿡탑	하츠	IH-361DT		400,000	40,000	40,000	320,000
	B/I 냉장고	LG전자	S711SI24B	전 타입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전기오븐	삼성전자	HSBN-361B		350,000	35,000	35,000	280,000
				84A,84B				
가전기기	D / 71+114TL			84C1,84C2				
	B/I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L1/R1	84D2,84D2O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 가전소물장			84D3,84D3O				
				97A1,97A2,97A3				
	B/I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L1/R1	59B,59C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59A,59AT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59B,59C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B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거실,주방 바닥	폴리싱타일	-	-	84C1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C2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D2,84D2O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D3,84D3O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97A1,97A2,97A3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맘스데스크	-	=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시스템가구 등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형	59A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구분	품목	업체명	모델명	선택 가능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19.10.10	잔금(80%) 입주지정일
				59B,59C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A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B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어다이성	84C1,84C2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	여닫이형	84D2,84D2O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D3,84D3O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97A1,97A2,97A3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알파룸			84C1,84C2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슬라이딩 도어	-	-	84D3,84D3O	700,000	70,000	70,000	560,000

■ 플러스 옵션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대금	계약금	농협은행	301-0251-6495-11	1757771 11755444
(시스템 에어컨 등)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 상기계좌는 [플러스 옵션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플러스옵션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1차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세대별 플러스 옵션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플러스 옵션(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이후 해지 시, 위약금(공급금액의 10%)이 발생하며, 중도금 1차 납입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 및 각 침실(벽걸이형)에 기본 설치 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기본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거실 및 안방에 매립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전실옵션 선택시 세대 매립냉매배관 전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 하이브리드쿡탑의 공급가액에는 일반 가스쿡탑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 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② 바닥	바닥재(마루, 현관바닥타일 및 디딤판 인조석),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수납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④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⑤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 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⑥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펜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가전기기 일체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소화기 , 주방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상기 품목은 즉	· - - - - - - - - - - - - - - - - - - -	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통합 주택형	59.9800A	59.9800B	59.9800C	84.9200A	84.9100B	84.9200C	84.0000D		97.0000A		
해당 타입	59A,59AT	59B	59C	84A	84B	84C1,84C2	84D2,84D2O	84D3,84D3O	97A1	97A2	97A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금액)	19,656,000	19,656,000	19,656,000	27,542,000	29,021,000	27,542,000	28,944,000	28,846,000	32,459,000	32,527,000	32,542,0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금액

	구분			고그리거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통합 주택형	해당 타입	발코니 면적(m²)	확장 면적(m²)	공급가격	계약시	'19.10.10	입주지정일
59.9800A	59A,59AT	34.1538	22.6147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59.9800B	59B	27.2587	16.1477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59.9800C	59C	28.9898	17.8788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84.9200A	84A	39.5921	28.1536	10,400,000	1,040,000	1,040,000	8,320,000
84.9100B	84B	39.8007	26.0070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84.9200C	84C1,84C2	35.6637	23.8524	9,900,000	990,000	990,000	7,920,000
84.0000D	84D2,84D2O	41.8319	29.9545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04.000D	84D3,84D3O	43.7059	31.8285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97A1	42.3316	30.3698	8,500,000	850,000	850,000	6,800,000
97.0000A	97A2	46.1056	30.3906	9,700,000	970,000	970,000	7,760,000
	97A3	46.2357	29.7663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은 기본형만 설치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 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 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습니다.

7.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수납 처리됩니다.
- ※ 별도 유상선택품목(가구류, 가전류)은 민간참여공동사업 시행자(건설사)와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대금은 별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납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8.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와 「주택법」제63조2의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으로서 중도금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개인에 따라 최대 40%(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서민·실수요자 요건 ① 무주택세대주
 - ②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이하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이하
 - ③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중도금대출 1회차부터 4회차(상기 조건의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5회차)까지 순차적으로 실행되며, 계약자가 대출실행 회차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이자후불제)**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당사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후불제로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세종특별자치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단, 예비입주자 선정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prod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05.24)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50%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8.05.24 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2019.05.24.)	② 기타지역(전국) 50%		. 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공고일 현재 위 기간에 해당하는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신청자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서 해당 지역에 거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전국) 및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85㎡소과 민영주택은 공급 유형별 모집조건에 따라 청약신청이 가능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 첨자발표(2019.06.10)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85㎡ 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함)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 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85m²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85㎡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구성원(85㎡ 소과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 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m²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m²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소형 . 저가 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85㎡ 초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 및 85m² 초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신청자는 소형 . 저가 주택등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로 가목2) 의 기준에 따름)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5m²초과 민영주택 신청자는 제외) 및 60m²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5㎡초과 민영주택 신청자는 제외) 및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 격 당첨자 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 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					
	215,500천원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부동산		, c. e.	구 넥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토지)	이하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27,990천원 이하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
		지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9년식 자동차를 2018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5m²초과 민영주택 신청자는 제외) 및 60m²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5㎡초과 민영주택 신청자는 제외) 및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60㎡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482,177원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49,026원)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 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 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대상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60m'이하),신혼부부·다자녀·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대상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 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 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얼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 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m I\hspace{-.1em}I\hspace{-.1em}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이전하거 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 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단,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의 종사자는「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제4조의제4항에 의거하여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청약일 2일 전까지 행복청장에게 명단을 제출한 자에 한하며, 행복청장에게 제출한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에 없는 자는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계약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 ※ 청약주택의 입주일(**2021년 11월 예정**) 이전에 퇴직 예정되어 있거나, 임기제 공무원 등 계약직 종사자로서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등은 주택특별공급 대 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의 특별공급대상기관이 타지역 이전 등으로 해당 주택입주일에 세종특별자치시내에 소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포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①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와 ③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단, ①과 ②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름)
-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으며, 지정계약기간에 계약을 못했을 지라도 특별공급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되어 추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8-35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 공급세대수의 50%를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선택(http://apt.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선택 → 사업명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약서 동의 → 청약내용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청약신청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8: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 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한국주택협회)을 통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동별 세대 구분 없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이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단, 모집결과 **140**%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 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세대가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는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 발생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분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읍면지역 이전기업 종사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 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충남동부보훈지청), 사업지구철거민(LH세종특별본부), 읍면지역이전기업종사자.의사상자.다문화가족(세종시청), 장애인(세종시청,대전시청,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0년이상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납북피해자(통일부), 우수선수(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5.29.)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 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2000.05.25 ~ 2019.05.2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② 85m²이하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85m²초과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5m²이하 국민주택만 해당)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85m'이하 국민주택만 해당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482,177원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상기 신청자격의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및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수입력은 신청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며, 신청자가 착오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펀딩스	총	배점기준		ш
평점요소	배점	기 준	점수	비고
계	100			
(1)		5명 이상	40	
(1) 미성년 자녀수	40	4명	3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인 경우만 포함
미경단 지역구		3명	30	
(2)		3명 이상	15	
(2) 영유아 자녀수		2명	1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8ㅠ의 시니ㅜ		1명	5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	5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 자
(4)		10년 이상	2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5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0	이야 이러, 구구역기원은 중요원이가 못 배구시의 구구역기원을 원정
(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해당 시.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 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5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4) 무주택 기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만 30세인 신청자와 만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만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만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만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경우 : 3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85m²이하 국민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만 신청 가능)
 - 85m'초과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만 신청 가능)
 - ※ 85㎡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85㎡이하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85㎡초과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5m'이하 국민주택만 해당)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85㎡이하 국민주택만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482,177원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 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주택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주택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⑥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상기 신청자격의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

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85m'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85㎡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및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수입력은 신청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며, 신청자가 착오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아래조건(①~⑦)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⑦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7조에 의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 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상기 신청자격의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 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및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 고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함.
 - ※ 예비신혼부부 :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함.
 -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482,177원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상기 신청자격의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اد ا	배점기준		ul ¬
	항 목	기준	점수	비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	
		3명 이상	3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나	자녀의 수	2명	2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인 경우만
		1명	1	포함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다	예상 구역원들시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전국 기구기선	1년 미만	1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1인 미린	1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라	납입 횟수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말함
	혼인기간	3년 이하	3	
		3년 초과 5년 이하	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신혼부부에 한함)	5년 초과 7년 이하	1	
마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한부모가족에 한함)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321,451원	4,932,162	5,359,892	5,879,113	6,398,334	6,917,55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 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 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충별·충별·충별·충별·축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및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수입력은 신청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며, 신청자가 착오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공급(85㎡이하 국민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사항은 "<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② (60m²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③ (60m²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60m²이하 주택 주택 공급 신청자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과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수입력은 신청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며, 신청자가 착오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지 않은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 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8. 일반공급(85m²초과 민영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을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은 일반공급 1순위 신청가능
 - <u>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85㎡초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이 제한됩니다.</u>

• 순위별 입주자저축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	1순위	85㎡ 초과	 ▶ 주택공급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원 중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 청약이 제한됨.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지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지 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 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 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별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과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가점제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추첨제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1순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 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7. 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 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 무주택자에 한함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서 추가 제출)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 건물 증기사양증명서, 선국물내성증은 중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 기숙선계승경시(매우자 군디제대 또는 한숙제대의 경우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 ■ 온한전계증정시 : 한 30세 이전에 결혼한 정구 온한전포를 확한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30	── - ↑ 년 중
② 부양 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3명	20	-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기비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3조, [별표1]

구 분신 청 자 격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세대원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하 "소형·저가주택등"이라 한다)을 1호

-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					
	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					
	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0					
	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법단경시 또는 메구시기 구역을 포유한 시골에 있는 경구에는 그 구역을 시문한 후 구구역시기 된 일(회 에당 구역을 포유한 시골에 있는 경구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되는에 구구적시기 된 글을 달인다)구나 구구적기인을 전용한다.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을 말하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한					
	다.]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미혼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2	으로 본다.					
부양가족의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					
인정기준	우자도 세대주여야 함)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0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입주자저축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가입기간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4						
주택소유 여부	 ① 미 ③에 따라 ᄌ태ᄉᄋ 어ᄇ르 파저워기나 ㅁᄌ태기가ᄋ 사저워커트 걸ᄋ에트 꿰??ᄌ꿰ለ하 미 꿰C?ᄌ에 따르다					
및 무주택기간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산정기준						

• 청약 추첨제 입주자 선정순서(85m²초과 민영주택만 해당)

청약 추첨제 입주자 선정 순서

-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주
- ② 나머지 25% 주택(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주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주(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이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 포함)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06.1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된 주택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85㎡이하 국민주택은 3년**, **85㎡초과 민 영주택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 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П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П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Ш	신청자격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 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П	신청방법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Ш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اا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신청자 본인 및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이전기관 종사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 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 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포함)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견본주택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 공급 예비 세대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 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급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별도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공급량의 40%(소수점 이하 절상)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 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로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③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 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 니다.(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85m²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동일 순차의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로 정하고, 그 다음의 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85㎡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	• 이전기관 종사자	2019.05.29.(수) (08: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주택협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u>www.housing.or.kr</u>)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스템 (세종시, http://apt.housing.or.kr)
별 자 그	•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19.05.29.(수) (APT2you: 08:00~17:30) (견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신청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견본주택 방문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세종 더휴 예미지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일원)
OI	• 1순위	2019.05.30.(목) (08:00~17:30)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의 반 광 대	• 2순위	2019.05.31.(금) (08: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PC 또는 모바일)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kbstar.com - 스마트폰: KB스타뱅킹 앱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 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의 경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이전기관 종사자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 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 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인터넷 신청(이전기관 종사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구 분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PC 청약_국민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	· 우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일반공급 PC 청약]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 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 약 완료	
(1,2순위)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 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 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안내사항	안내사항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한국주택협회서(http://apt.housing.or.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시간: 08: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신청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 접수 (주택전시관,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 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09:00~16:00):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주택전시관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접수)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확인 이 가능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 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시)", 그 외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mark>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mark>)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mathbf{W}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일정을 당첨자 계약 종료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2019.06.10(월)	2019.06.11(화) ~ 06.14(금) 10:00~16:00	2019.06.26(수) ~ 06.28(금) 10:00~16:00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세종 더휴 예미지	견본주택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인터넷 및 ARS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구년	<u>1</u>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	1간	2019.06.10.(월) ~ 2019.06.19.(수) (10일간)				
인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	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휴대폰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지	2019.06.10.(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전화에는 개별 응답하지 않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 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 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19.06.11~2019.06.14)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으로 최대 10년의 범위(85㎡초 과 민영주택은 최대 5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 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분양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 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5m²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	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①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가능)
0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Ο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0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0	⑤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⑦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공공주택 60m'이하의 경우에만 해당)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Ο	⑨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Ο	⑩ 출입국에 관한 시실증명	본인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기타지역 거주 당첨자는 제출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19.05.24.)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85m²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①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가능)
0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0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④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0	⑤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⑥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사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0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기타지역 거주 당첨자는 제출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19.05.24.)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필수	류 유 형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애당사)	①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② 신분증	본인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가능)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0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공통서류	0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이전기관 종사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출 필요없음.
	0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배우자 및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
		O	@ E84mmm	세대구성원	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
	0		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이전기관 종사자, 기관추천 당첨자는 제출 제외)
		0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19.05.24.)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본인	• 동·호수 발표일(2019.06.10.)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①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0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		0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구		0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공급		0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0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85㎡이하 국민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0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85㎡초과 민영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노부모 부양		0	②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특별공급		0		피부양 직계비속	추가 증빙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0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
	0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0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ᄩᄖ고그		0	③ 기본증명서	자녀 보이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특별공급		0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 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0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Yh VII +i +		0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②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 정받고자 할 경우
	0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18.05.25~2019.05.24)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공단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아파트 분양대금(10%) + 발코니 확장대금(10%) 계약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본인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계약 시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세종 더휴 예미지 홈페이지 게시 예정)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계약 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추가서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VIII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 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 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17.1.20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 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및 지구,단지 여건

■ 유의사항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쓰레기투입구(자동 크린넷),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 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제공되는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 시의 피난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단지외부여건

- 4-2생활권 L1블록의 공동주택의 명칭은 "**새나루마을 4단지**"입니다.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도로 등 공공공간과 접한 부지 내 설치하는 보도블록, 보행등, 맨홀 등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개발계획의 변경 등 사업추진 중 일부가 변경, 취소, 지연될 경 우 입주시기가 지연이나 단지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 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자동크린넷 집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 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로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관리주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행복도시 내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철탑의 현황, 철탑위치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은 LH공사분입니다.
- 단지 내 전면공지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인접도로 조성에 따라 포장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이므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7층~20층 규모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차량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각 동 피로티의 높이는 피로티의 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료전지와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연료전지는 지하층에 태양광 패널은 각 동의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발전기실/저수조/열교환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주출입구 및 차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활용(정차위치 표기)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 정차위치, 에어매트 설치 위치 부분은 조경식재(교목, 관목 등)설치가 제한됩니다.
- 주출입구 인근 지상주차장 및 쓰레기투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설치됩니다.
- 주출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라 단지내부에 험프식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 401동에 인접하여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1층에 공공자전거스테이션, 지하층 인근으로 연료전지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402동의 지하층 인근으로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403동의 지하층 부분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404동의 지하층에 재활용폐기물보관창고가 계획되어 있고, 동측면의 커튼월룩 디자인에 따라 16층-20층 세대는 세대의 일부 창호 및 난간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되며, 옥상에 는 옥상조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405동의 지하층 부분에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실, 독서실, 주민까페,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406동 인근으로 지하주차장경사로가 계획되어 있고, 1층에 경로당, 용역원실, 맘스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테라스 또는 발코니가 교차되는 주거동의 경우 세대내 침실과 인접한 우수 드레인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에는 동전기실, 제연휀룸, 공용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용창고는 세대별로 분할할 수 없고,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됩니다.
- 각 동의 1층에는 우편물수취함이 계획되어 있고, 설치위치에 따라 우편함의 종류(일반형, 양문형)가 상이하며, 실시설계 또는 공사 진행 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또는 상층부에 위치한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차량불빛, 야간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02동과 405동의 지하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402동 옥상에 TV공정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통학버스대기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출입구, 단지내/외도로, 비상차로, 근린생활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세대의 경우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투입구, 재활용품보관소, 드라이에리어(D.A), 천창, 광덕트,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공용부분으로써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며, 내부의 일부공간에 자전거보관대, 드라이에리어(DA) 등이 설치되고, 보행통로의 상부에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패드가 설치되고, 경로당 설치기준에 따라 경로당과 인접하여 정원이 설치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창문는 각 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문가 설치되며, 계단실은 3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고정창 이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지하층에 동별 1개소씩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 설치 등으로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자동크린넷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폄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내, 동 주현관, 단지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공용창고는 계획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승강기홀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입할 수 있으며, 설치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 합니다.
-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 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며, 출입 램프의 높이는 2.7M이며, 왕복2차로 폭은 주동선 7M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써,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활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 시설에 사회적 기업(육아용품 대여서비스, 주민카페, 카쉐어링등)을 유치해 일정기간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단지내 마을공동체 수익사업(플리마켓, 알뜰시장, 주민회의실 대여, 독서실 운영, 게스트하우스 운영등)을 추진 (추진 예정인 수익사업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은 관리비용으로 충당합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수준보다 상향된 마감재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공사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는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김치냉장고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 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등 마감재 형태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은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 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침실에 매립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아닙니다.
- 침실 벽체에 세대분전반과 통신단자함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 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일부 세대에 적용된 테라스는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구조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세대 계약자는 테라스 외곽부에 벽체, 창호 또는 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를 양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세대 계약자는 테라스에서의 외부활동시 인접세대에 사생활침해 또는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 테라스 또는 오픈발코니 설치세대의 경우 테라스 및 오픈발코니 진출입시 실내 바닥난방 및 우수 침투방지를 위하여 창호 하단부에 턱이 형성되어 있어 진출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을 주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돌출발코니형, 테라스형, 테라스 미설치형 등 주택 타입, 주거동별, 주거호수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01동의 15층~17층, 406동 13층~15층의 59AT타입은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이 상호 교차 배치되며 측벽발코니가 설치됩니다.
- 84C2타입의 지하다락은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84D2타입은 403동 2층/6층, 405동 2층/6층의 경우 테라스가 없는 세대입니다.
- 84D3타입은 403동 4층, 405동 4층/8층의 경우 테라스가 없는 세대입니다.
- 97A1타입은 동별 위치에 따라 외벽 바깥의 선형이 다릅니다.
- 테라스, 돌출발코니, 개방형발코니는 유리난간이 적용되며, 테라스 또는 발코니 출입문은 개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 외부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 2.9m, 천정고는 2.4m로 전세대가 동일합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 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배기는 공용루프휀 방식으로 옥탑에 배기휀이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고, 싱크대 하부장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의 외기에 면하는 벽면 및 천장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59B,59C,84D2,84D2O,84D3,84D3O타입의 실외기실 문치수는 실제 시공시 100mm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1	집현초등학교	
조승석파	초2	새나루초등학교	미정
중학교	중1	집현중학교	
고등학교	고1	반곡고등학교	2019.09(예정)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법」제3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성 능 등 급	0 11 11 1	0.000	
가. 소음 관련 등급	Lance on according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The second second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21. 자연지반 녹지율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1. 사건시만 숙시율	*
제대 간 경계적의 자급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톱 조성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5. 402 GMT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나. 구조 관련 등급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어. 1 또 한편 6 급 성능한목	성능등급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1. 내구성	*	THE RESERVE THE PROPERTY OF TH	1 **
2. 가변성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27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175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700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V2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5. 에너지 성능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7.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0. 환경성선연 제품(EPD)의 사용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7 E V 2	1. 감지 및 경보설비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16. 빗물관리	****	2. 제연설비	*
16. 빗울판리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3. 내화성능 4. 수평피난거리	*
17. 빗물 및 유물시아구 이용 18. 절수형 기기 사용	***	4. 무성비단거리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6. 피난설비	**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	능등급 인 2019년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증서를 발급한니다 3월 21일 조기 등 정 원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최상층 지붕(직접면)	적 용
최상층 지붕(간접면)	적 용
최하층 바닥(직접면)	적 용
최하층 바닥(간접면)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조명밀도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형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택지공급가격	24,525,357		
			기간이자	24,525,357 823,412		
	택지비		필요적 경비	25,942		
			그 밖의 비용	2,328,967		
			계	27,703,679 621,124		
-1	-1.1		토공사	621,124		
건축비	공사비	토목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용벽공사 석축공사	22,990
	우·오수공사	267,072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296,031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2.70 404
	조경공사	2,378,491
	부대시설공사	84,206
	٦ 	3,669,914
	공통가설공사	2,825,986
	가시설물공사	1,114,815
	지정 및 기초공사	2,417,556
	철골공사	12,002,026
	철근콘크리트 공사	13,802,829
	용접공사	270 (21
	조적공사	378,621
	미장공사	
	단열공사	695,166
	방수·방습공사	2,219,769
	목공사	790,865
건축	가구공사	
	금속공사	446,346 403,275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2,372,826
	성모등사 유리공사	363,739
	타일공사	1,496,905
	돌공사	1,490,903
	도장공사	399,332
	도배공사	447,575
	수장공사	1,002,298
	구성증시 주방용구공사	2,907,361
	잡공사	169,677
	المامة المام	36,390,364
	급수설비공사	1,448,372
	급탕설비공사	725,757
	오배수설비공사	967,676
	위생기구설비공사	951,967
	난방설비공사	1,450,466
기계설비	가스설비공사	207,359
	자동제어설비공사	116,247
	투수설비공사	241,919
	공조설비공사	
	계	6,109,765
	전기설비공사	2,968,435
	정보통신공사	1,280,228
그 밖의 공종	소방설비공사	2,066,969
	승강기공사	1,078,711
	Ä	7,394,343
	일반관리비	1,689,909
그 밖의 공사비	이윤	724,247
	Ä	2,414,156
ı	설계비	1,441,851
	감리비	288,427
	일반분양시설 경비	1,256,015
간접비	분담금 및 부담금	3,131,262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4,401,437
	٦ a	10,518,992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4,277,787

■ 택지비 산출내역(60㎡ 이하)

적용금액(조성원가의 90%)	조성원가
6,926,966,610원	7,696,637,980원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60m² 초과)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대한감정평가법인
19,669,404,830원	19,542,492,200원	19,796,290,800원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항목	계 기간이자	흙막이 기타 공사비 비용	71.51	계	공동주택 성능등급	법정초과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주	7151			
87						복리시설 설치비용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배관	초고속 통신	기계환기 설비	쓰레기 이송설비	택건설 추가비용	기타 비용	
금액	3,178,530,685	823,412,082	172,193,078	2,182,925,525	14,278,107,113	1,048,535,058	1,133,565,349	1,865,308,348	1,083,899,590	804,533,017	1,535,908,719	676,022,449	5,044,247,282	1,086,087,301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L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131-82-13727) 한신공영()(114-81-04605) (주)금성백조주택(306-81-14852)	한신공영(주)(114-81-04605) (주)금성백조주택(306-81-14852)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9.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세종 더휴 예미지 견본주택

세종 더휴 에미지 연장

《해결교 (해결교 (해결교 (해결의 실상원) 전구시설(예원) 전구시설(제원) 전구시설

■ 위치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운영기간** : 2019.05.24 개관일부터 ~ 분양 종료 시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하며, 당첨자서류접수 및 계약기간은 일반인 관람 불가

■ 운영시간 : 10:00~17:30

사이버 견본주택 (PC·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PC] www.thehue-yemizi.com ■ 세종 더휴 예미지 견본주택: 1833-3325 (10:00 ~ 18:00)

[모바일] www.thehue-yemizi.com